

# 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 
조례중개정조례안】

1996. 10. 4
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9. 10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9. 23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0. 2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윤병규)

### 가. 제안 이유

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 골자

지금까지는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에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 사전 결정된 사업과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업도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 사전결정된 사업 및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운용관리지침(15층이하 용적율 150퍼센트이하)에 따라 사업을 실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 코자 함(부칙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「경과조치」가 없어 당초 조례 시행전에 주택  
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거 사전결정 되었거나 사전결정 신청된 사업도  
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어  
의당 개정하여야할 조례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 
사료됨.

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### 5. 토 론

- 없었음

### 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### 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95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. (제 회)

#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6. 9. 10.

#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1996. 9. 19.

제 출 자 서 산 시 장

## 1. 제 안 이 유

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오던중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.

## 2. 주 요 골 자

지금까지는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4의 규정에의하여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 사전 결정된 사업과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업도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기 사전결정된 사업 및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운용관리지침(15층이하 용적율 150퍼센트이하)에 따라 사업을 실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 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 코자 함(부칙제2항)

##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(이하 “사전결정” 이라한다)이 되었거나 사전결정을 신청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“준농림지역운영관리지침”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당초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